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7
------	-------

제출년월일 : 2017.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 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 나.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의 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의2, 제8조, 제10조)
- 나.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항)
-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3. 23. ~ 4. 12.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권고사항 : 자문단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확보를 위한 규정 필요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조치사항 : 미반영

- 해당 전문가 자문단은 자문분야가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무자문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공사 1억원, 용역 5천만원, 지원금 1천만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자문이 공사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 이러한 공사 분야는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도장, 방수 등으로 여성 전문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 자문단 운영도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문신청에 따라 분야별 위촉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균형참여의 대상인 합의제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은 실효성이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81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천재지변”을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 그 밖의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4.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5.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60	40	
8.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0.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0	4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단, 임의관리단지는 미적용)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특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5)	구성(5), 미구성(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5)	3강좌이상(5), 1~2강좌(3),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4)	참여(4), 미참여(0)	
	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 간 갈등 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 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 미상정(0)	
	상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마포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 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70%(마포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마포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마포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4조의3제1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토목 ⑪ 건축 ⑫ 그 외의 사항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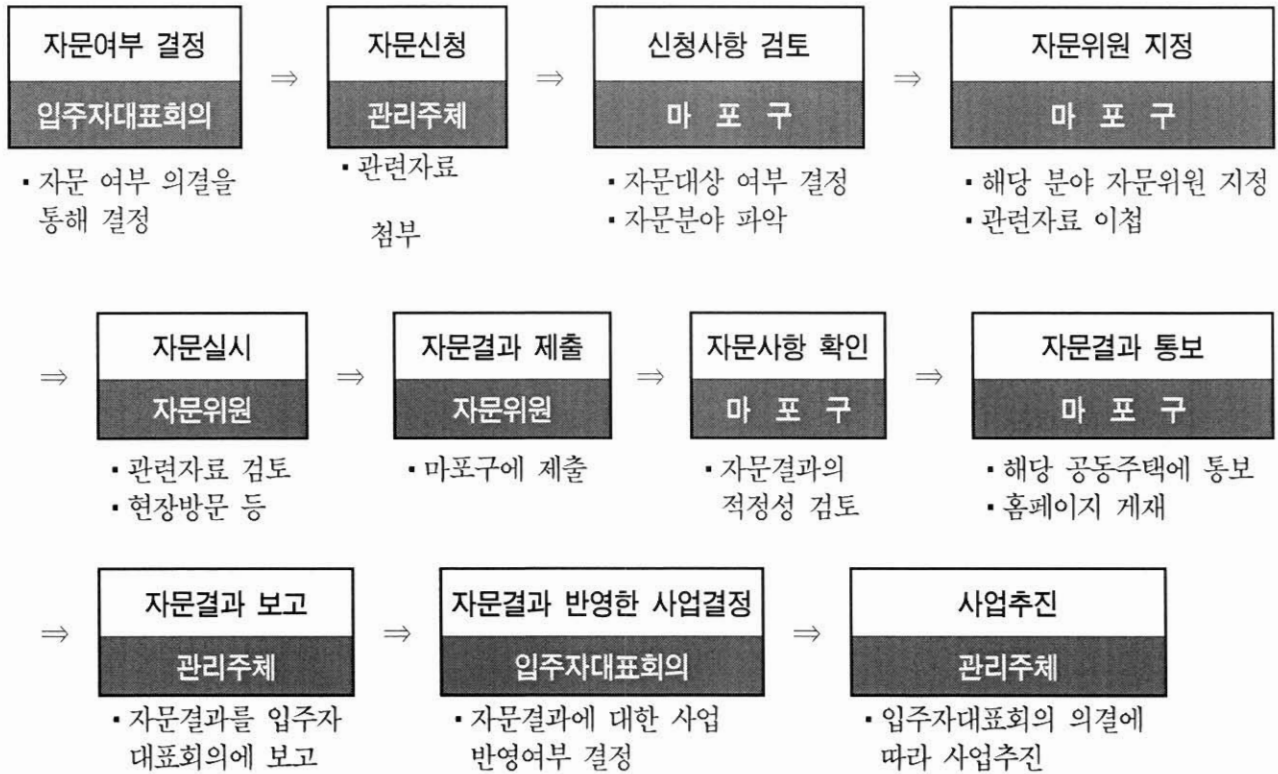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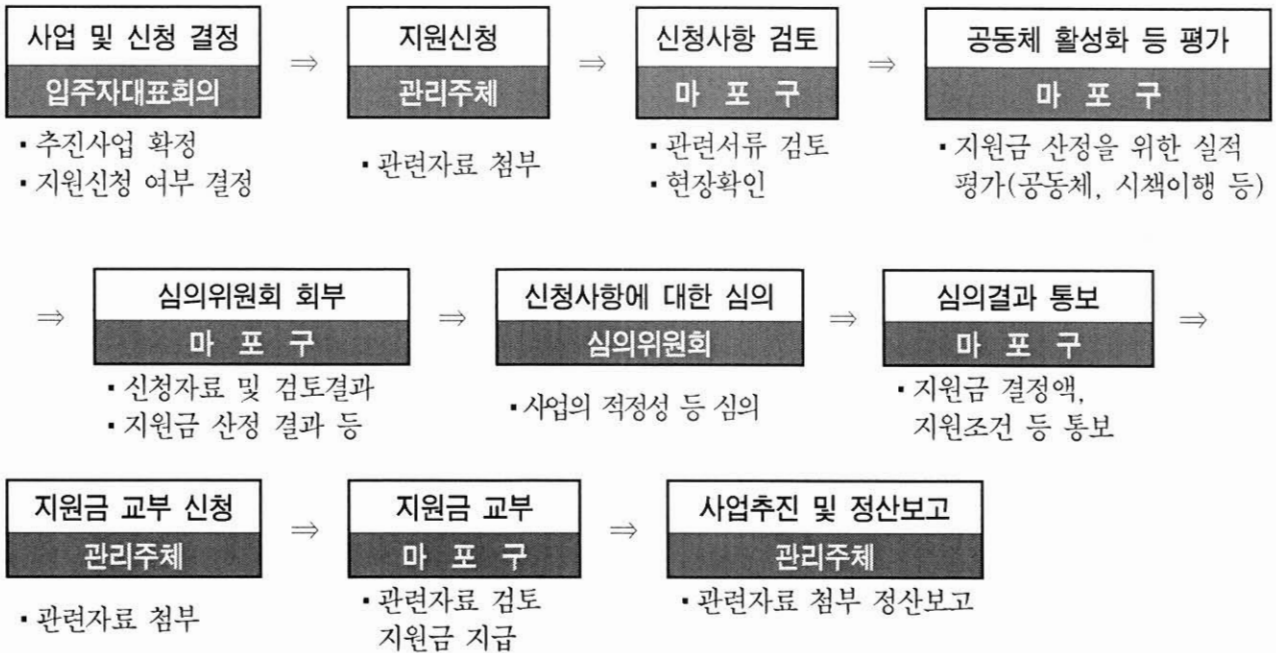
□ 자 문 료 : 무료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마포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지원 제외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통장사본(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2.설계도서(노임, 재료비등 산출 근거내역 포함), 3.공사·사업계약서 사본, 4.공사·사업계약의 입찰내용 및 계약자 선정 공고문 (게시판등에 입주민에 공지한 내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small>(단위:천원)</small>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단위:천원)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공사·사업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공사 전·후 사진, 5. 준공계 사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지원대상) ① ~ ④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신 설></p> <p>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 ----- ----- ----- ----- ----- ----- -----.</p> <p>제3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p> <p>제4조(지원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p>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② -----

-----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생략)
2.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 보수비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5. 지원제외 대상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 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4조제2항 관련)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신설〉 ⑩ 그 외의 사항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5. 지원제외 대상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4조의3제1항 관련)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토목 ⑪ 건축 ⑫ 그 외의 사항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외의 사항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사 <input type="checkbox"/> 용역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신청 단지	공동 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락처				
자문 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과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 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생략〉				

(뒷면)

지원 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 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 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사 <input type="checkbox"/> 용역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신청 단지	공동 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삭 제〉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락처				
자문 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 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과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 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삭 제〉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현행과 같음〉				

(뒷면)

지원 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 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 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 으로 지원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 단지	공동 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생략>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 단지	공동 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삭 제>	세 대 수	세대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삭 제>	동수/세대수	동 세대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삭 제>	동수/세대수	동 세대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삭 제>	세 대 수	세대
<현행과 같음>				